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소방위

엄영식

■ 확인자 :

소방경

정성택

(Handwritten signatures)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영등포소방서 (신길119안전센터)	INCOM	2016년 3월	0011KM195	-관리번호 : 11000010398311 -제조일: 2018.07.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계량값은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엄영식 *(인)*
 ■ 확인자 : 소방경 정성택 *(인)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영등포소방서 (신길119안전센터)	INCOM	2016년 3월	0164KM195	-관리번호 : 11000010398311 -제조일: 2018.07.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태깁기 사용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엄영식 *엄영식*
 ■ 확인자 : 소방경 정성택 *정성택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영등포소방서 (신길119안전센터)	INCOM	2016년 3월	0227KM196	-관리번호 : 11000010398311 -제조일: 2018.07.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해당없음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 소방위 엄영식 *엄영식*
 ■ 확인자 : 소방경 정성택 *정성택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영등포소방서 (신길119안전센터)	INCOM	2016년 3월	0933KM199	-관리번호 : 11000010398311 -제조일: 2018.07.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)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)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)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)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)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 / 부)	래인없음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)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)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

공기호흡기 용기 등 안전관리 점검 체크리스트

■ 점검자 :

소방위

업 영 식 *함정식*

■ 확인자 :

소방경

정 성 태 *정성태*

본부(부서명)	제조사	제조일	용기번호	사용 충전기 (관리번호, 제조일 등)
영등포소방서 (신길119안전센터)	INCOM	2016년 3월	0995KM199	-관리번호 : 11000010398311 -제조일: 2018.07.

근거규정 (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)	점검항목	점검결과	비 고 (사유 등)
제7조제1항제4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충전된 호흡용 공기의 교체 적정성 - 매 1년마다 새로운 공기로 교체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6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출동용 고압용기의 압력 유지 상태 - 공기호흡기 용기 25MPa, 잠수장비 용기 18MPa 유지	(적) / 부	
제7조제1항제7호 (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)	○ 점검이력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등록 - 세척, 충전, 수리 및 불용이력 기록상태	(적) / 부	
제8조제1항 (정기검사 등)	○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 - 본부 자체 실시 또는 공인검사기관 검사	(적) / 부	
제8조제3항제1호 (정기검사 등)	○ 용기 내부검사 현장 확인 - 부식, 이물질, 수분 등 육안검사	(적) / 부	
제9조제2항 및 제3항 (용기 등의 파기)	○ 고압용기의 파기방법 적정성 - 절단, 원형 가공불가 조치, 공인검사기관 의뢰	(적) / 부	해당없음
제11조제1항제4호 (정비실의 설치)	○ 충전 완료 용기와 충전 필요 용기의 구분 보관 (식별표지 포함)	(적) / 부	
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7조제2항제1호	○ 용기 재검사 여부 - 10년 이하는 5년, 10년 초과는 3년 - 15년 경과된 용기는 폐기	(적) / 부	

※ 점검자는 소방서별 지정 점검반원 / 확인자는 점검기관 해당 부서의 장(119안전센터장 등)